

# IFRS 적용실무 해설 4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註>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결정

공업용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주)국제는 생산과정에서 블렌딩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블렌딩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산출물은 매년 일정한 편이며, 이 기계는 또한 여러 종류의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계의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 5년마다 매우 향상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기계가 출시되고 있다. 경영진은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기계의 진부화를 근거로 정률법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주)국제의 블렌딩 기계에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인식, 측정,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결정 등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이 기준서 문단 60에 의하면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블렌딩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의 결정은 기계의 사용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자산에 내재된 경제적효익은 그 자산의 사용에 의해서 주로 소비될 것이

며, 이러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라는 것은 그 자산의 사용에 의해 산출되는 제품에 의해 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국제는 블렌딩 기계를 이용하여 매년 일정한 산출물은 생산하므로, 상기 예에서 가장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 될 것이다.

경영진이 주장하는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기술적 진부화라는 요인은 기계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겠으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아닌 물리적 진부화라는 요인을 감가상각방법의 결정에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가진 기계의 등장으로 인한 기계의 진부화라는 요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자산손상의 징후로 고려되어 손상검사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미래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가 매년 일정한 상황에서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회계기준과 기준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관행상 해석의 차이 및 세법의 고려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대부분 산출물이 기준이 될 것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기업들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각각의 기업이 처한 상황과 경제적 환경에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종산업에서 사용되는 감가상각방법도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잔존가치에 대하여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정치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문단 61), 위의 사례에서처럼 자산의 기술적 진부화 등의 요인이 파악되었다면 내용연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박상은 회계사

## 2. 총당부채 - 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의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와 기준서의 전반적인 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실무적용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정들이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차이 중 하나인 장기총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 40에서는 총당부채의 잔액을 대차대조표일마다 검토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총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말 총당부채의 변동을 검토하기는 하나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59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문단 84(5)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총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할인율 역시 보고기간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총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시 할인율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A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5년간의 품질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향후 1,000의 품질보증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초 추정시점의 할인율인 명목 무위험 세전이율은 4.5%이다.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할인율은 4%로 변경되었다.

		Year 0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최초 할인율	4.50%	802	838	876	916	957	1,000
변경된 할인율	4.00%				925	962	1,000
최초 차입원가			36	38	40	41	43
총당부채 조정					9	-4	-5
조정된 차입원가			36	38	49	37	38

최초 시점에 회사는 명목가액 1,000을 5년의 기간에 4.5%로 할인한 802를 총당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그러나 3년도 말에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준대로 4.5%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현재가치 916이 아니라 새로운 할인율 4%를 적용하여 계산한 925를 총당부채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 9를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총당부채의 현재가치 할인 및 할인율에 따른 변동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 이자율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자율의 변동이 큰 기간에는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총당부채의 현재가치 금액을 올바르게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유승경 회계사

### 3.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발행자의 재량적 상황 및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보통주로의 전환시

K사는 2020년 이전에 발행자인 K사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액면 발행하였다. 2020년까지 상환하지 않은 우선주는 2021년 1월 1일에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될 보통주수는 잔여 우선주 액면가액을 전환일의 보통주 시장가로 나누어 계산된다. 이 경우 K사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지분상품(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된다.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이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문단 11)

따라서,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K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상환 여부는 K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K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K사가 일정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우선주는 자기지분상품인 보통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의 보통주 주식수는 전환일 당시의 보통주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당해 우선주를 당기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우선주의 공정가치는 수취한 대가에 우선주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고 매기 상각 후 원가로 계상한다.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대리인, 중개인, 고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AG13) 당해 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은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문단 35)



조건을 달리하여 K사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건이 전환시의 보통주 시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조건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통주는 자기지분상품이므로 K사가 부담하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의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지분상품을 또 다른 자기지분상품으로 교환하는 조건은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지분상품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의 조건을 위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 K사의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우선주로 계상될 금액은 수취대가에서 우선주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액이다. 자본으로 계상된 우선주는 후속 회계기간 동안 재측정하지 않는다. [icon]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규희 회계사

## 시 사 경 제 용 어

### 해외주식에탁증서(Depository Receipts)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다음달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516억엔 규모 해외 EB의 차환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SK텔레콤(017670) 주가를 감안할 때, EB 보유자들이 SK텔레콤 주식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차환발행 ▲내부자금이나 외부차입을 통한 원리금 상환 ▲SK텔레콤 해외주식에탁증서 매각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2008. 7. 17, 이데일리)

해외주식에탁증서는 국내 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유통편의를 위해 발행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예탁기관이 발행주식(원주)을 근거로 발행, 유통하는 예탁증서를 DR이라고 한다. DR은 보관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며, 환율문제, 대금결제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주식을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 유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